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5

발의연월일: 2021. 5. 20.

발 의 자: 장경태・이규민・홍성국

권인숙 · 김영호 · 조응천

민병덕 • 유정주 • 이용빈

한병도 · 김남국 · 홍정민

신동근 · 오영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,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'알뜰교통카드'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, 현재 서울, 부산, 경기, 인천 등 전국 136개 시·군·구에서 시행되고 있음.

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 실적 분석에 따르면, 이용자가 '20.1월 2만명에서 '20.12월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, 이용자 월 평균 12,8 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용자의 89%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. 또한 보행·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, 교통카드 데이터와

보행·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음.

이에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·추진 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·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,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, 제10조의12, 제22조의2, 제23조).

법률 제 호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"알뜰교통카드"란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의 연계를 통하여 정기적인 대중교통수 단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.

제1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12(알뜰교통카드 사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지원 사업(이하 "알뜰교통카드 사업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알뜰교통카드 사업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10조의12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
 - 2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(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)
 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
 -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- 제23조의 제목 "(권한의 위임)"을 "(권한의 위임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, "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"을 "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

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"알뜰교통카드"란 교통카드
	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
	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
	데이터의 연계를 통하여 정기
	적인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
	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통
	카드를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10조의12(알뜰교통카드 사업)
	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
	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정기
	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
	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(이하
	"알뜰교통카드 사업"이라 한다)
	<u>을 할 수 있다.</u>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
	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
	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
	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
	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

제12조(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있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
- 6. (생략)

<신 설>

을 구숙·운영할 수 있다.
세12조(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
지원)
1. ~ 4. (현행과 같음)
5 앜띀교통카드 사업

6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①
국토교통부장관(제23조제1항에
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
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
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
서 같다)은 제10조의12에 따른
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

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

- 2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 국인등록자료(외국인등록번호 를 포함한다)
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

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

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

 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

 자료
-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 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 한다.

제23조(권한의 위임) 국토교통부 저장관은 이 법에 <u>의한</u>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2에

제23조 <u>(권한의 위임 등)</u> ①
<u>따른</u>

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--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(이하 이 조에서 "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장"이라 한다) -----
 -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.